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장종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29

발의연월일: 2025. 2. 26.

발 의 자: 장종태·김 윤·김선민

박용갑 · 조승래 · 박정현

문진석 · 송재봉 · 박지원

이훈기 • 주철현 • 박해철

김문수 · 강준현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에 의해 초등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사 직군의 정신질환 예방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남.

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및 성별 특성에 맞추어 정신건강 관련 교육·상담, 정신질환의 예방·치료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소방관, 경찰관, 군인, 교정공무원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나, 교직원, 어린이집 교사, 유치원 교사,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 등 과중한 업무로 비롯된 스트레스가 제3의 보호대상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음.

이에 소방・경찰・군공무원이나 교정공무원, 교직원, 어린이집・유치원 교사,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 실태조사, 정기 건강검진 실시 등 정신건 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,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3호나목・제10조제1항제2호・제11조 및 제7조제3항제2호의2・제13조제1항제2호의3・제15조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나목 중 "제15조제6항에"를 "제15조제7항에"로 한다.

제7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소방·경찰·군공무원, 교정공무원, 교직원, 어린이집·유치원 교사,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

제10조제1항제2호 중 "특성에"를 "특성 및 직업별 특성에"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"생애주기 및 성별"을 "생애주기, 성별 및 직업별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생애주기 및 성별"을 "생애주기, 성별 및 직 업별"로 한다.

제13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치 원

2의3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
제1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, 같

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9항) 중 "제7항까지에서"를 "제8항까지에서"로, "제8항에"를 "제9항에"로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소방·경찰·군공무원, 교정공무원, 교직원, 어린이집·유치원 교사,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경우 정신건강검진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,
1. •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"정신건강복지센터"란 정신	3
건강증진시설, 「사회복지사	
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	
(이하 "사회복지시설"이라 한	
다),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	
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	
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	
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	
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	
스 지원사업(이하 "정신건강	
증진사업등"이라 한다)을 하	
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	
단체를 말한다.	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	나. <u>제15조제7항에</u>
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	
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	
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	
는 단체	
4. ~ 8. (생 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7조	·(국기	가계획.	의 수	-립	등)	1	•
2	(생	략)					
3	국기	가계획	또는	<u>-</u> ス] 역 계	회획이	}

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

1.·2. (생 략) <신 설>

되어야 한다.

3. ~ 16. (생략)

④ ~ ⑦ (생 략)

제10조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 야 한다. 다만,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 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성별, 연령 등 인구학적 <u>특</u> 성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,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

제7조(국가계획의 수립 등) ①・
② (현행과 같음)
3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2의2. 소방・경찰・군공무원,
교정공무원, 교직원, 어린이집
• 유치원 교사, 요양보호사,
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관리
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에
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정신건
<u>강증진사업</u>
3. ~ 16. (현행과 같음)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실태조사) ①
1. (현행과 같음)
2 <u></u> 특
<u>성 및 직업별 특성에</u>

현황

3. ~ 8. (생략)

② ~ ⑥ (생 략)

- 제11조(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 등) ① (생 략)
 - 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생애 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 의 조기발견·치료를 위한 교 육·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 업을 시행한다.
 - ③ (생 략)
 - ④ 제2항에 따른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·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 진사업의 범위, 대상 및 내용 등과 제3항에 따른 조기치료비 지원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 증진사업 실시) ①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·학교 의 장 및 사업장의 사용자는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 육·상담과 정신질환 치료와의 연계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

3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
발견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
<u>생애주</u>
<u>기, 성별 및 직업별</u>
<u>.</u>
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생애주</u>
<u>기, 성별 및 직업별</u>
제13조(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
증진사업 실시) ①

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1.·2. (생 략) <<u>신 설></u>

<신 설>

3.·4. (생략) ②·③ (생략)

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~ ④ (생 략)

<신 설>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
2의2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유치원

2의3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어린이집

3. • 4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~ ④ (현행과 같 음)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소방·경찰·군공무원, 교정공무원, 교적공무원, 교직원, 어린이집·유치원 교사,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요구되는 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경우 정신건강검진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

<u>⑤</u> ~ <u>⑧</u> (생 략)

⑨ 제1항부터 <u>제7항까지에서</u>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 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<u>제8항에</u> 따른 긴급전 화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u>한다.</u>
$\underline{6}$ \sim $\underline{9}$ (현행 제5항부터 제8
항까지와 같음)
<u> ⑩</u> <u>제8항까지에서</u>
<u>제</u> 9항에